

[별지 제6호서식](규칙 제6조제3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5. 2. 20.>

(앞 면)

후원회 등록증

1. 등 록 번 호 제 호
2. 명 칭 (약 칭)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대 표 자
5.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

위와 같이 등록함.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인

1. 유의사항

- 이 등록증은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5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.
-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여 온 경우 “명칭(약칭)”란에는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
- 이 등록증은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.

2. 등록증 재교부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|
| 재 교 부 사 유 | |
| 재 교 부 일 자 | 년 월 일 |
| 재 교 부 담 당 자 | |